

● 제30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2510, 2511, 2512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1. 05. 27.

다. 회부일 : 2021. 06. 01.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4,968,566백만원

○ 징수결정액 : 4,909,618백만원

○ 실제수납액 : 4,901,024백만원

○ 미수납액 : 8,595백만원

○ 결손처분 : 해당없음

○ 다음년도 이월액 : 해당없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8%(전년도 99.8%)임.

<표>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4,968,566	4,909,618	4,901,024	-	8,595	99.8%
일반회계	3,485,697	3,446,328	3,437,734	-	8,595	99.8%
200 세외수입	54,438	75,663	67,068	-	8,595	88.6%
210 경상적세외수입	14,005	14,024	13,200	-	824	94.1%
211 재산임대수입	1,258	802	802	-	-	1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258	802	802	-	-	100.0%
212 사용료수입	-	49	49	-	-	100.0%
212-08 기타사용료	-	49	49	-	-	100.0%
213 수수료수입	34	37	37	-	-	100.0%
213-01 증지수입	34	37	37	-	-	100.0%
214 사업수입	12,281	12,426	11,863	-	563	95.5%
214-02 주차요금수입	74	67	67	-	-	100.0%
214-09 기타사업수입	12,207	12,359	11,796	-	563	95.4%
216 이자수입	432	710	450	-	261	63.3%
216-06 기타이자수입	432	710	450	-	261	63.3%
220 임시적세외수입	40,433	61,639	53,868	-	7,771	87.4%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	5	1	-	4	20.2%
223-03 변상금	-	5	1	-	4	20.2%
224 기타수입	37,562	55,417	51,551	-	3,866	93.0%
224-01 불용품매각대	10	46	46	-	-	100.0%
224-04 시·도비반환금수입	29,715	46,680	42,867	-	3,813	91.8%
224-06 그외수입	7,838	8,690	8,637	-	53	99.4%
225 지난년도수입	2,870	6,217	2,316	-	3,901	37.3%
225-01 지난년도수입	2,870	6,217	2,316	-	3,901	37.3%
300 지방교부세	170	-	-	-	-	-
310 지방교부세	170	-	-	-	-	-
311 지방교부세	170	-	-	-	-	-
311-02 특별교부세	170	-	-	-	-	-
500 보조금	3,419,797	3,350,242	3,350,242	-	-	100.0%
510 국고보조금등	3,419,797	3,350,242	3,350,242	-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3,419,797	3,350,242	3,350,242	-	-	100.0%
511-01 국고보조금	3,402,514	3,332,962	3,332,962	-	-	10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01	9,301	9,301	-	-	100.0%
511-03 기금	7,982	7,979	7,979	-	-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93	20,423	20,423	-	-	100.0%
710 보전수입등	11,293	20,423	20,423	-	-	100.0%
712 전년도이월금	11,205	20,385	20,385	-	-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1,205	20,385	20,385	-	-	1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88	39	39	-	-	1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8	39	39	-	-	100.0%
의료급여특별회계	1,482,869	1,463,290	1,463,290	-	-	100.0%
200 세외수입	2,905	2,977	2,977	-	-	1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562	562	562	-	-	100.0%
216 이자수입	562	562	562	-	-	100.0%
216-01공공예금이자수입	562	562	562	-	-	100.0%
220임시적세외수입	2,342	2,415	2,415	-	-	100.0%
223과징금및과태료등	144	91	91	-	-	100.0%
223-01과징금	144	91	91	-	-	100.0%
224기타수입	2,199	2,324	2,324	-	-	100.0%
224-06그외수입	2,199	2,324	2,324	-	-	100.0%
500보조금	752,382	732,730	732,730	-	-	100.0%
510국고보조금등	752,382	732,730	732,730	-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752,382	732,730	732,730	-	-	100.0%
511-01 국고보조금	752,382	732,730	732,730	-	-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7,582	727,582	727,582	-	-	100.0%
710 보전수입등	5,200	5,200	5,200	-	-	100.0%
711 잉여금	5,200	5,200	5,200	-	-	100.0%
711-01 순세계잉여금	5,200	5,200	5,200	-	-	100.0%
720 내부거래	722,382	722,382	722,382	-	-	100.0%
721 전입금	722,382	722,382	722,382	-	-	1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22,382	722,382	722,382	-	-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8,248,884백만원

○ 예산증감 : 30,521백만원

○ 예산현액 : 8,279,404백만원

○ 지출액 : 8,050,578백만원

○ 이월액 : 24,028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33,687백만원

○ 불용액 : 171,111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1%(전년도 0.9%)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 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71,111	47,009	0	102,034	61	21,970	0

<표> 2020년도 복지정책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 D)	불용률
복지정책실 합계	8,279,404	8,050,578	24,028	33,687	171,111	2.1%
일반회계	6,774,765	6,571,998	20,247	33,687	148,833	2.2%
복지정책과	2,272,036	2,160,404	279	29,077	82,276	3.6%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296,562	1,185,085	279	29,077	82,121	6.3%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195,241	156,098	0	26,578	12,566	6.4%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006,629	937,831	0	158	68,640	6.8%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56,985	53,591	279	2,341	773	1.4%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37,707	37,565	0	0	142	0.4%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303	229	0	0	74	24.3%
기본경비	303	229	0	0	74	24.3%
일반예산(재무활동)	975,171	975,090	0	0	82	0.0%
내부거래지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722,562	722,481	0	0	82	0.0%
보전지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609	2,609	0	0	0	0.0%
내부거래지출	250,000	250,000	0	0	0	0.0%
지역돌봄복지과	352,363	343,818	0	0	8,545	2.4%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56	56	0	0	0	0.0%
기본경비	56	56	0	0	0	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352,305	343,760	0	0	8,545	2.4%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100,917	100,623	0	0	294	0.3%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5,773	5,659	0	0	114	2.0%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245,616	237,478	0	0	8,137	3.3%
일반예산(재무활동)	1	1	0	0	0	0.0%
보전지출	1	1	0	0	0	0.0%
어르신복지과	2,602,220	2,576,422	16,636	568	8,593	0.3%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2,592,781	2,566,983	16,636	568	8,593	0.3%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61,902	236,725	16,636	568	7,972	3.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2,239,187	2,239,023	0	0	164	0.0%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55,548	55,097	0	0	450	0.8%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6,144	36,138	0	0	6	0.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53	53	0	0	0	0.0%
	기본경비	53	53	0	0	0	0.0%
	일반예산(재무활동)	9,386	9,386	0	0	0	0.0%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9,386	9,386	0	0	0	0.0%
인생이모작지원과		318,537	296,080	15	452	21,990	6.9%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313,930	291,473	15	452	21,990	7.0%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223,922	204,976	0	452	18,494	8.3%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90,008	86,497	15	0	3,497	3.9%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4,569	4,569	0	0	0	0.0%
	보전지출	4,569	4,569	0	0	0	0.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39	39	0	0	0	0.0%
	기본경비	39	39	0	0	0	0.0%
장애인복지정책과		260,875	250,150	597	1,524	8,604	3.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259,907	249,185	597	1,524	8,602	3.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82,212	172,319	597	1,518	7,778	4.3%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72,933	72,825	0	1	106	0.1%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2,005	1,372	0	0	633	31.6%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2,757	2,668	0	4	85	3.1%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55	52	0	0	3	4.6%
	기본경비	55	52	0	0	3	4.6%
	일반예산(재무활동)	913	913	0	0	0	0.0%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913	913	0	0	0	0.0%
장애인자립지원과		770,029	763,265	2,031	1,941	2,792	0.4%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767,852	761,108	2,031	1,941	2,772	0.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740,440	736,154	0	1,922	2,364	0.3%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7,454	5,103	2,031	19	300	4.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19,959	19,852	0	0	107	0.5%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133	2,112	0	0	20	1.0%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133	2,112	0	0	20	1.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44	44	0	0	0	0.2%
	기본경비	44	44	0	0	0	0.2%
자활지원과		198,705	181,859	689	125	16,032	8.1%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61,044	55,572	689	125	4,659	7.6%
	노숙인 자활지원	33,872	31,060	689	6	2,118	6.3%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7,172	24,512	0	119	2,540	9.3%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134,982	123,689	0	0	11,293	8.4%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134,982	123,689	0	0	11,293	8.4%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40	40	0	0	0	0.0%
	기본경비	40	40	0	0	0	0.0%
	일반예산(재무활동)	2,639	2,558	0	0	81	3.1%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639	2,558	0	0	81	3.1%
도시개발특별회계		20,965	17,214	3,641	0	110	0.5%
인생이모작지원과		20,965	17,214	3,641	0	110	0.5%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20,965	17,214	3,641	0	110	0.5%
	은퇴후제2인생설계지원	20,965	17,214	3,641	0	110	0.5%
균형발전특별회계		805	665	140	0	0	0.0%
장애인자립지원과		805	665	140	0	0	0.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805	665	140	0	0	0.0%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지원(균특)	805	665	140	0	0	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82,869	1,460,701	0	0	22,168	1.5%
복지정책과		1,482,869	1,460,701	0	0	22,168	1.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482,762	1,460,594	0	0	22,168	1.5%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482,762	1,460,594	0	0	22,168	1.5%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07	107	0	0	0	0.1%
	인력운영비	107	107	0	0	0	0.1%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총 15건, 3,647백만원

다. 예산 이체 : 해당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28건, 9,292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총 7건, 2,341백만원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9건, 24,028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합계	6,748,372	6,659,165	6,539,139	9,164	110,861
당해(소계)	6,732,907	6,643,700	6,531,620	1,710	110,370
일반회계	4,738,624	4,669,069	4,586,753	1,710	80,60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82,869	1,463,217	1,460,701	0	2,516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511,414	511,414	484,166	0	27,249
명시이월(소계)	11,469	11,469	4,015	7,454	0
일반회계	11,469	11,469	4,015	7,454	0
사고이월(소계)	3,996	3,996	3,504	0	492
일반회계	3,996	3,996	3,504	0	492

3.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0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계	327,887	△231,080	260,872	491,952	96,80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3,018	△113	540	653	12,90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5,384	△1,137	2,738	3,875	24,247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7,990	△348	652	1,000	7,642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81,495	△229,482	256,942	486,424	52,013

4. 채권현재액 : 32,409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0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6,034,774 m^2 1,101,512백만원,
- 건물 255,362 m^2 347,774백만원,
- 기타 32건 2,780백만원,

총 1,452,066백만원 상당의 금액

<표> 2020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19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계	1,371,646	80,420		1,452,066
행정 재산	계	1,361,880	63,174	1,425,054
	공용재산	633,652	44,161	677,813
	공공용재산	721,944	45,309	767,253
	기업용재산	6,284	704	6,988
	보존재산			
일반재산	9,766		9,665	12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0년도 말 복지정책실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8개, 현재액 12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2020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8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27	2	-	2	-	21	21	8
	금액	71	3	-	3	-	62	62	12
일반회계	수량	27	2	-	2	-	21	21	8
	금액	71	3	-	3	-	62	62	12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세입 결산 검토

1) 세입결산 총괄 개요

- 2020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조 9,68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9,096억원임.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4조 9,01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86억 원으로, 수납률은 99.8%로 나타남.

<표>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4,968,566	4,909,618	4,901,024	-	8,595	99.8%
일반회계	3,485,697	3,446,328	3,437,734	-	8,595	99.8%
200 세외수입	54,438	75,663	67,068	-	8,595	88.6%
210 경상적세외수입	14,005	14,024	13,200	-	824	94.1%
211 재산임대수입	1,258	802	802	-	-	1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258	802	802	-	-	100.0%
212 사용료수입	-	49	49	-	-	100.0%
212-08 기타사용료	-	49	49	-	-	100.0%
213 수수료수입	34	37	37	-	-	100.0%
213-01 증지수입	34	37	37	-	-	100.0%
214 사업수입	12,281	12,426	11,863	-	563	95.5%
214-02 주차요금수입	74	67	67	-	-	100.0%
214-09 기타사업수입	12,207	12,359	11,796	-	563	95.4%
216 이자수입	432	710	450	-	261	63.3%
216-06 기타이자수입	432	710	450	-	261	63.3%
220 임시적세외수입	40,433	61,639	53,868	-	7,771	87.4%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	5	1	-	4	20.2%
223-03 변상금	-	5	1	-	4	20.2%
224 기타수입	37,562	55,417	51,551	-	3,866	93.0%
224-01 불용품매각대	10	46	46	-	-	100.0%
224-04 시·도비반환금 수입	29,715	46,680	42,867	-	3,813	91.8%
224-06 그외수입	7,838	8,690	8,637	-	53	99.4%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225 지난해도수입	2,870	6,217	2,316	-	3,901	37.3%
	225-01 지난해도수입	2,870	6,217	2,316	-	3,901	37.3%
300	지방교부세	170	-	-	-	-	-
	310 지방교부세	170	-	-	-	-	-
	311 지방교부세	170	-	-	-	-	-
	311-02 특별교부세	170	-	-	-	-	-
500	보조금	3,419,797	3,350,242	3,350,242	-	-	100.0%
	510 국고보조금등	3,419,797	3,350,242	3,350,242	-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3,419,797	3,350,242	3,350,242	-	-	100.0%
	511-01 국고보조금	3,402,514	3,332,962	3,332,962	-	-	10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01	9,301	9,301	-	-	100.0%
	511-03 기금	7,982	7,979	7,979	-	-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93	20,423	20,423	-	-	100.0%
	710 보전수입등	11,293	20,423	20,423	-	-	100.0%
	712 전년도이월금	11,205	20,385	20,385	-	-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1,205	20,385	20,385	-	-	1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88	39	39	-	-	1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8	39	39	-	-	100.0%
	의료급여특별회계	1,482,869	1,463,290	1,463,290	-	-	100.0%
200	세외수입	2,905	2,977	2,977	-	-	1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562	562	562	-	-	100.0%
	216 이자수입	562	562	562	-	-	1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62	562	562	-	-	100.0%
	220임시적세외수입	2,342	2,415	2,415	-	-	100.0%
	223과징금및과태료등	144	91	91	-	-	100.0%
	223-01과징금	144	91	91	-	-	100.0%
	224기타수입	2,199	2,324	2,324	-	-	100.0%
	224-06그외수입	2,199	2,324	2,324	-	-	100.0%
500	보조금	752,382	732,730	732,730	-	-	100.0%
	510국고보조금등	752,382	732,730	732,730	-	-	100.0%
	511 국고보조금등	752,382	732,730	732,730	-	-	100.0%
	511-01 국고보조금	752,382	732,730	732,730	-	-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7,582	727,582	727,582	-	-	100.0%
	710 보전수입등	5,200	5,200	5,200	-	-	100.0%
	711 잉여금	5,200	5,200	5,200	-	-	100.0%
	711-01 순세계잉여금	5,200	5,200	5,200	-	-	100.0%
	720 내부거래	722,382	722,382	722,382	-	-	100.0%
	721 전입금	722,382	722,382	722,382	-	-	1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22,382	722,382	722,382	-	-	100.0%

- 2020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조 4,856억 9천 7백만원으로 이 중 3조 4,463억 2천 8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3조 4,377억 3천 4백만원을 실제 수납해 징수결정액 대비 99.8%를 수납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도 복지정책실 과별 징수액은 위와 같으며 각 과별 징수결정액은 어르신복지과(1조 9,984억), 복지정책과(7,979억), 장애인자립지원과(3,263억)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장 수납률이 저조한 과는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징수결정액 633억 9천 4백만원 가운데 619억 3천 7백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수납률이 97.7%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과년도 부과금 2억 4천만원이 전액 미수납 되었으며, 인강원 보조금 환수 과년도 부과금 10억 2천 7백만원이 전액 미수납된 것이 주요 사유이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체납중인 인강원 기본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됨.

<표>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 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복지정책실	3,485,697	3,485,697	3,446,328	3,437,734	-	8,595	99.8%
복지정책과	846,645	846,645	797,877	797,337		539	99.9%
지역돌봄복지과	58,770	58,770	54,197	53,851		346	99.4%
어르신복지과	1,993,096	1,993,096	1,998,376	1,995,803		2,573	99.9%
인생이모작지원과	106,076	106,076	105,925	103,757		2,168	98.0%
장애인복지정책과	59,756	59,756	63,394	61,937		1,457	97.7%
장애인자립지원과	319,755	319,755	326,299	325,112		1,188	99.6%
자활지원과	101,600	101,600	100,260	99,936		324	99.7%

2) 과학적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운용 필요

-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향후 세입추계 상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입내용별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필요성이 있음.
- 복지정책실의 2020연도 예산에서는 비교적 추계가 가능한 정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에서 과수납되거나 과부족되는 예산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세입예산은 적정한 자료와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을 전망하고 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실제수입과의 차이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며, 적정한 자금유통의 전망 위에서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경우 최근 3년간 결산(전망)액 산술평균 세입추계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차이 발생한 것으로, 자치구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규모에 대한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사전에 거쳐서 예산 편성액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코로나 대응에 따른 국비 추가 교부 등으로 실제 교부된 국비 금액이 더 큼. 변경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비용 역시 적지 않아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과정 등을 통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

예산 과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 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 비율
공유 재산 임대 료	1,258,085	802,008	802,008	△456,0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표준액 물가상승률 및 최근 3년간 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공시지가는 낮게 책정되어 임대료 감소로 징수결정액 하향 조정 ◦ 50+재단및50+캠 퍼스(서부,중부,남부)재산관리효율성 을위한관리방법변경(사용허가→관리위탁(2020.4.1.~2025.3.31.))에 따른차액발생(사용료부과:2020.1.1.~2020.3.31.) ◦ 세입과목 일부변경 사용: 공유재산임대 료→기타사용료(8백 만원) 	-36%
시· 도비 반환 금수 입	29,715,198	46,680,273	42,867,352	13,152,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결산(전 망)액 산출평균 세 입추계 예산액과 실 제수납액 차이 발생 	44%
국고 보조 금사 용잔 액	11,204,587	20,384,762	20,384,762	9,180,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예산액 대비 변경내시, 코로나 대 응에 따른 국비 추 실금 가 교부 등으로 국 제 교부된 국비 액이 더 큼 	82%

예산 과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 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 비율
민간 자회 수입	88,145	38,614	38,614	△49,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수급자 및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70%이하 자영업자(신용등급 무용)를 대상으로 저소득 자영업자의 개인과산, 사업부 등 상환 지연으로 징수부족액 발생 	-56%
기타 사용 료	0	48,654	48,654	48,6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입예산 추계 누락 (9백만원) 50+동부캐피스트립부지부설주차장소유권이전(광진구→서울시, 2020.3.10.)에따른사용료수입발생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33조(대부료의납기)에따라차년도대부료선납하여실제수납액과 차이발생 ('21년대부료' 20.12.선납 '20년 대부료' 19.12.선납) 	100%
변상 금	0	5,206	1,054	1,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회차의 변상금 분납금 중 무단납유자가 5회까지는 납부하였으나 6회차(2020.2월) 이후 채무상환 능력부족으로 체납중 지속적으로납부를독려하고있으며(고지서 등기 발송, 방문 등)38징수과에협조 요청 중 	100%
불용 매 각 대	9,600	46,301	46,301	36,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관 차량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안전조치, 수리비 과다발생 등의 사유로 매각 결정 장애인복지관 불용차량및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매각대금 추가발생 	382%

예산 과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 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 비율
특별 교부 세	170,000	0	0	△1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 무더위 쉼터 홍보비 예산으로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총괄실로 예산 교부하여 자치구로 사업비 직접 교부 	-100%

-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금전적 제재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벌적 의미에서 규제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세입예산을 현실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0회계연도에 복지정책실 과징금은 총 1건으로 일부 보건복지부 처분이 과징금 부과에서 업무 정지로의 처분환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세입 결산액의 과부족 사유를 밝히고 있음.
 - 의료급여법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음.

<표>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

예산 과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 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 비율
과징금	143,877	91,255	91,255	△52,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보건복지부 처분변경(과징금 부과에서 업무정지로의 처분환원) 등에 따른 부족수납 	-36.6%

3) 부족 수납분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과다한 차이가 발생(20%이상)한 사업은 다음 3건으로 나타남. 먼저 기타이자 수입은 고엽제전우회 미반환 보조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미반납 건 등으로 전체 7억 1천 만원 중 4억 5천만원으로 2억 6천 1백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남. 변상금 5백만원 중 1백만원을 수납해 과부족액이 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연도 수입에서 보조금 잔액, 발생이자 미반납액 등으로 수납된 금액이 전체 62억 1천 7백만원 중 23억 1천 6백만원으로 39억 1백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남.

<표>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 발생 사업 (20% 이상)

(단위: 천원, %)

예산 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 비율
기타 이자 수입	432,065	710,182	449,578	△260,604	고엽제전우회 미반환 보조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미반납 건으로, 단 전체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1/2을 분할하여 상계처리(수납)예정	-36.7%
변상금	0	5,206	1,054	△4,152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한 미납부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	-79.8%
지난연도 수입	2,870,396	6,216,716	2,316,101	△3,900,614	지난연도 보조금 잔액, 발생이자 미반납액 등으로 자치구 추정 미편성 등으로 부족수납	-62.7%

- 이 중 변상금의 경우 어르신복지과의 시립승화원 인근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결정액 520만원 등임. 이 중 어르신복지과의 변상금 부과 금액 중 105만원만 수납되었음.
-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복지정책실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해 준 재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샘'에서 점유 중인 사유지와 관련한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 징수 결정액 2억 4천 16만원이 전액 미수납 되었음.

4)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수립 요망

-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내시에 의거하여 서울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고, 중앙정부의 가내시가 변경될 경우에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서상의 간주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 항목을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
-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일방적 변경할 경우, 매칭비율에 의한 서울시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로 인해 사업의 예측가능성, 안정성 및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국비 매칭 사업의 성격상 국비가 감액되면 서울시비분을 감액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기회비용 상실 및 사장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예산변경에 따라 사업을 축소할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기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에 기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국비매칭에 의한 서울시비분 감액으로 수립된 예산이 불용처리되면 다른 대상자를 위해 활용될 수 있었던 자원이 적시에 사용되지 못하는 등 기회비용의 상실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집행부는 복지자원인 예산의 사장을 막고, 사업수혜대상자인 시민이 가진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의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변경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표>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급여-생계급여	817,011,732	551,772,000	265,239,732	770,261,997	505,054,000	265,207,997	46,718,000	◦ 확정내시 국비 예산과다 책정되어 집행상황 반영하여 예산 감액
2	복지정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57,006,000	57,006,000	0	55,266,000	55,266,000	0	1,740,000	◦ 복지부에서 지원가구 8.8만 가구를 예상하여 국비교부했으나 실제 5.1가구 신청, 3.9만가구 지원함. 실제 지원액만 교부
3	지역돌봄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50,766,000	33,844,000	16,922,000	45,766,000	28,844,000	16,922,000	5,000,000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20.10월) 이후 추경이 없어 반영할 수 없었음
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6,625,073	2,257,233	4,367,840	6,568,653	2,200,813	4,367,840	56,420	◦ 보건복지부 감액변경내시('20. 9. 4.)에 따른 과소 교부
5	어르신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0,592,815	27,037,750	13,555,065	40,394,815	26,839,750	13,555,065	198,000	◦ 2020년 노인돌봄사업 통합 후 기존 노인돌봄사업 상계 처리 후 보건복지부의 감액변경내시('20. 9. 17.)에 따른 과소 교부

연번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6	인생이모작자원과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79,962,703	90,662,320	89,300,383	172,759,510	83,459,127	89,300,383	7,203,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의 국비 예산은 일자리쿠폰(국비100%) + 노인일자리(국비30%)로 구성되어 있음. 일자리쿠폰 사용 불편함으로 당초 국비교부 대비 신청인원 저조로 인한 불용과 수도권지역 코로나 19로 인한 어르신일자리 장기 중단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불용이 과다 발생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국비는 교부되지 않음
7	인생이모작자원과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공모)	3,920,000	2,352,000	1,568,000	3,919,700	2,351,700	1,568,0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로 불용이 예상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300천원 감액 교부됨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909,446	454,723	454,723	903,514	448,791	454,723	5,9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사업 포기 및 낙찰 차액 발생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03,587,421	42,173,440	61,413,981	102,794,721	41,380,740	61,413,981	792,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발생
10	장애인복지정책과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972,999	146,875	826,124	970,374	144,250	826,124	2,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 사업운영비(사무관리비) 확정내시액 변경

연번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11	장애인 자립지원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3,417,958	1,708,979	1,708,979	2,939,189	1,279,210	1,659,979	429,769	◦ 국비 최종변경내시액(2020. 8.20)에 따른 국비 교부
12	자활 지원과	자활근로 사업 지원	106,828,463	72,837,592	33,990,871	99,754,136	65,763,265	33,990,871	7,074,327	◦ 국비 변경내시 확정통보 이후 보건복지부 사업예산 조정에 따른 과소교부
13	자활 지원과	희망키움 통장Ⅰ	2,683,105	1,829,380	853,725	2,486,092	1,678,325	807,767	151,055	◦ 국비 변경내시 확정통보 이후 보건복지부 사업예산 조정에 따른 과소교부
14	자활 지원과	희망키움 통장Ⅱ	7,161,692	4,164,577	2,997,115	6,828,618	3,831,503	2,997,115	333,074	◦ 국비 변경내시 확정통보 이후 보건복지부 사업예산 조정에 따른 과소교부
15	자활 지원과	청년희망 키움통장	2,590,163	1,766,002	824,161	2,410,833	1,623,853	786,980	142,149	◦ 국비 변경내시 확정통보 이후 보건복지부 사업예산 조정에 따른 과소교부

2 세출 결산 검토

1) 세출결산 총괄 개요

-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6조 7,747억 6천 5백만원이고, 이 중 6조 5,719억 9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8억 3천 3백만원(불용률 3.0%)으로 나타남.
-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과는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전체 예산 7,700억 2천 9백만원 가운데 7,632억 6천 5백만원을 집행해 99.1%의 집행률을 보였고,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과는 자활지원과로 전체 예산 1,987억 5백만원 가운데 1,818억 5천 9백만원을 지출해 91.5%의 집행률을 보임.

<표>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합 계	6,751,621	6,774,765	6,571,998	20,247	33,687	148,833	97.0
복지정책과	2,271,596	2,272,036	2,160,404	279	29,077	82,276	95.1
지역돌봄복지과	349,461	352,363	343,818	0	0	8,545	97.6
어르신복지과	2,585,962	2,602,220	2,576,422	16,636	568	8,593	99.0
인생모작지원과	318,352	318,537	296,080	15	452	21,990	92.9
장애인복지정책과	260,710	260,875	250,150	597	1,524	8,604	95.9
장애인자립지원과	768,424	770,029	763,265	2,031	1,941	2,792	99.1
자활지원과	197,116	198,705	181,859	689	125	16,032	91.5

○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 5,046억 3천 9백만원이고, 이 중 1조 4,619억 5천 7백만원을 집행해, 집행잔액은 222억 7천 8백만원 (불용률 1.7%)으로 나타남.

- 도시개발특별 회계 집행률(82.1%)이 저조한 이유는 50+동부캠퍼스 건립 부지 일대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 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20.5월~'20.12월) 이행 등으로 공사 발주 등 후속 공정이 순연됨에 따라 사업비 연내 집행이 어려워 3,641백만원(시설비 3,352백만원, 감리비 289백만원)을 사고 이월함. 집행 잔액 110백만원은 50+북부캠퍼스 준공('20.10월)에 따른 집행 잔액(시설비) 70백만원 및 준공 행사 미 개최 등으로 미집행액(시설부대비) 40백만원 발생함.
- 균형발전특별 회계 집행률(82.6%)이 저조한 사유는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증축설계비(140백만원)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¹⁾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설계비 연내 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 이월함.

<표> 복지정책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A-B-C-D)	집행률 (B/A)
합 계	1,515,033	1,504,639	1,478,580	3,781	0	22,278	98.3
복지정책과	1,500,219	1,482,869	1,460,701	0	0	22,168	98.5
의료급여 기금특별 회계	1,500,219	1,482,869	1,460,701	0	0	22,168	98.5
인생이모작지원과	13,788	20,965	17,214	3,641	0	110	82.1
도시개발특별 회계	13,788	20,965	17,214	3,641	0	110	82.1
장애인복지지원과	1,025	805	665	140	0	0	82.6
균형발전특별 회계	1,025	805	665	140	0	0	82.6

1)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 예산의 변경사용

(1) '20 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 내용을 매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제도를 두고 있음.

<표>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구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러한 예산 변경사용 제도를 집행부가 편의적으로 남용할 경우, 의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심의한 예산의 취지와 목적을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예산 변경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예산 변경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의회보고 등 그 절차와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하여 집행부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예산변경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 것임.

○ 복지정책실의 2020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5건, 36억 4천 7백만원, 예산변경은 총 27건, 77억 9천 2백만원으로 나타남.
- 특별회계 예산변경은 총 1건, 15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금번 결산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표> 2020년도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건수	-	15	27	-
승인금액	-	3,647	7,792	-

<표> 2020년도 복지정책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건수	-	-	1	-
승인금액	-	-	1,500	-

①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의 예산 전용 건수와 금액은 15건, 36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전용 건수 11건, 46억 2천 2백만원 비해 건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사용 내용은 사업의 운영예산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10건)이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확보(3건),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비용 지원 비용 확보(1건), 계약 보증금 지출액 확보(1건)으로 나타남.
 -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업의 전용사유를 살펴보면, 루디아의집 폐쇄로 인하여 이용인 49명을 타 거주시설로 전원 함에 따라 동일 사업 내 편성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표> 2020년 복지정책실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연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7,168,320	860,000		2020-12-18	54,478,818	97%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비용 지원
		보훈단체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50,000		860,000		910,000	100%	
2	복지정책과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06-01 기타자본이전	22,361	22,361		2020-05-29	0	-	실태조사 관리 시스템 구축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448,177		22,361		470,537	100%	
3	어르신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분담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90,627,000	468,757		2020-11-30	186,077,892	98%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
		기초연금 지급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2,236,405,853		468,757		2,236,874,610	100%	
4	어르신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분담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92,057,000	430,000		2020-05-25	186,077,892	98%	어르신 건강안전 솔루션 IoT 기기 설치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3,524,944		430,000		3,908,832	99%	
5	인생이모작지원 과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525,000	465,000		2020-09-08	245,160	57%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 공 사업 추진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31,440,084		465,000		31,861,347	100%	

연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5,263,010	40,000		2020-12-17	4,717,547	90%	민간위탁시설 비품 구매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40,000		40,000	100%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97,354,811	89,000		2020-12-17	94,591,213	97%	장애인거주시설 방역기 자재 구매 지원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9,000		88,701	100%	
8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418,000	100,000		2020-04-03	318,000	100%	월체어 전용가방 보급 추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286,544		100,000		1,206,544	100%	
9	장애인복지정책과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15,400	135,000		2020-11-24	237,400	49%	계약 보증금 지출액 확보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406-01 기타자본이전			135,000		133,442	99%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307-05 민간위탁금	705,400	90,000		2020-11-24	237,400	49%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입주 준비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90,000		90,000	100%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장애인의사 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60,000	20,000		2020-11-24	130,309	93%	의사소통 보조기기 확보
		서울시장애인의사 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0,000			20,000	40,000	

연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7,400,273	589,000		2020-12-07	16,718,273	99%	장애수당-기초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추가 교부에 필요한 시비 매칭
		장애수당-기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9,173,000		589,000		19,553,470	99%	
13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7,618,273	218,000		2020-12-07	16,718,273	99%	장애수당-차상위 등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추가 교부에 필요한 시비 매칭
		장애수당-차상위 등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212,000		218,000		11,290,239	99%	
14	자활지원과	노숙인 등 의료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860,543	15,000		2020-03-19	3,273,136	88%	노숙인 정책 국제 콘퍼런스 개최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9,500		15,000		0	0%	
15	자활지원과	노숙인 등 의료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965,543	105,000		2020-03-19	3,273,136	88%	노숙인 정책 국제 콘퍼런스 개최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50,000		105,000		0	0%	

②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변경사용 건수는 총 28건, 92억 9천 2백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51건, 109억 6천 2백만원 비해 변경건수 및 예산액이 감소하였음.
- 예산집행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이므로 예산액의 크기가 작더라도 하더라도 예산 심의 이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또한 2019회계연도 51건의 변경사용에 비해 2020회계연도 28건으로 45% 감소하였음. 예산의 변경사용은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한 것 보다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한 결과를 낳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 임.
- 다만 예산변경 중 일부 항목은 집행부가 예산 편성 당시 사업 설계 미비로 인한 감리비 부족(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명시이월(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임. 또한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추진을 목적으로 노인복지관 시설관리(집행률 74%)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집행률 57%)간 예산 변경을 실시했음에도 두 사업 모두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 예산 변경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음.

<표> 2020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예산변경 현황

(단위: 천원, %)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 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	복지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9,700,340	400,000		2020- 12-03	11,094,436	57%	수급자 증가로 부가급여 예산부족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3,568,720		400,000		23,896,379	100%	
2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7,245,600	77,280		2020- 12-18	54,478,818	97%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관련 운영비 지원
		보훈단체 지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10,000		77,280		487,280	100%	
3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7,843,600	98,000		2020- 04-06	54,478,818	97%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보훈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384,000		98,000		2,370,071	95%	
4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87,963,732	31,735		2020- 12-03	719,444,000	91%	급여 부족으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재산장제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14,665		31,735		4,646,400	100%	
5	복지정책과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97,499	47,639		2020- 05-29	49,709	100%	실태조사 관리 시스템 구축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400,538		47,639		470,537	100%	
6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202-03 국외업무여비	15,000	1,835		2020- 11-26	0	0%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 인원 변동에 따른 부족분 확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204-03 특정업무경비	102,600		1,835		104,234	1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7	지역돌봄복지과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401-01 시설비	704,295	41,389		2020-12-10	2,321,086	96%	감리비 부족분 확보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401-02 감리비	28,214		41,389		186,226	100%	
8	지역돌봄복지과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401-01 시설비	724,198	19,903		2020-03-26	2,321,086	96%	감리비 부족액 확보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401-02 감리비	8,311		19,903		186,226	100%	
9	지역돌봄복지과	고독사 예방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40,000	233,100		2020-11-20	840,000	76%	국고보조금 매칭시비 부족분 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206,114		233,100		22,789,214	100%	
10	지역돌봄복지과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454,915	794,880		2020-05-12	12,583,414	100%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576,940		794,880		24,898,556	99%	
11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45,000	945,000		2020-12-02	470,026	87%	(명시이월예산) 시립시설개보수비용확보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3 민간위탁사업비			945,000		3,425,091	100%	
12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9,267	37,250		2020-11-23	168,381	98%	2020년 시립노인요양시설 긴급 기능보강 지원에 따른 예산변경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442,845		37,250		3,425,091	1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3	인생이모작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977,000	538,000		2020-09-08	245,160	57%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추진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2-03 민간위탁사업비	4,220,000		538,000		4,700,451	99%	
14	인생이모작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60,000	83,000		2020-09-08	245,160	57%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추진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6,457		83,000		810,748	74%	
1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1,412,964	150,000		2020-11-06	10,822,822	96%	단기거주시설 예산 통계목 간 조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865,188		150,000		924,610	91%	
1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0,821,560	150,000		2020-11-23	40,614,741	100%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추가지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790,668		150,000		2,939,847	100%	
17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871,374	20,000		2020-06-26	4,134,019	100%	장애인체육시설 지원예산 조정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894,178		20,000		1,754,884	100%	
1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10,786	62,000		2020-06-26	787,897	100%	장애인체육시설 지원예산 조정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14,178		62,000		1,754,884	1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9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39,016	2,700,000		2020-11-25	2,642,185	75%	활동지원급여 부족분 중당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활동지원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3,071,371		2,700,000		365,771,371	100%	
20	장애인자립지원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92,958	24,000		2020-12-17	2,558,420	76%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12월 소요예산 부족 자치구 추가 재배정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761,036		24,000		14,781,568	100%	
21	장애인자립지원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17,958	25,000		2020-12-07	2,558,420	76%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12월 소요액 파악에 따른 예산 부족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736,036		25,000		14,781,568	100%	
22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401-01 시설비	500,000	11,652		2020-09-25	617,667	56%	설계경제성 검토 및 특정기술(제품)선정 심사 수당 부족분 확보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401-03 시설부대비	4,000		11,652		14,684	94%	
23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38,530	905,637		2020-02-12	1,431,555	100%	사업계획 개선에 따른 통계목 변경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18,715		905,637		1,324,352	100%	
24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170,000	133,090		2020-10-27	137,574	13%	쪽방주민지원시설 감리비 확보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401-02 감리비			133,090		317,570	100%	
25	자활지원과	희망키움통장 I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83,105	13,254		2020-12-07	2,461,552	97%	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자립지원과-4804호, 20.10.12)
		내일키움통장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88,717		13,254		1,101,971	1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6	지활지원과	청년희망키움통장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90,163	116,822		2020- 12-07	2,381,662	96%	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자립지원과-4804 호, 20.10.12)
		청년저축계좌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88,409		116,822		2,905,231	100%	
27	지활지원과	희망키움통장 I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69,851	131,171		2020- 12-07	2,461,552	97%	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자립지원과-4804 호, 20.10.12)
		청년저축계좌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57,238		131,171		2,905,231	100%	
28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307-05 민간위탁금	1,462,996,128	1,500,000		2020- 11-20	1,439,600,838	9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일부 증가하여 확정내시 대비 예산부족으로 보건복지부 현금급여비 증액하여 변경 내시
		의료급여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845,864		1,500,000		15,345,864	100%	

3) 사업별 검토의견

(1) 불용액 과다사업 점검

- 불용액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불용액이 빈발할 경우에는 다음해 예산편성 시 삭감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기에 서둘러 사업을 발주하고, 미집행잔액은 이월하는 등 예산집행에 건전하지 못한 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의 축소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복지정책실의 20%이상 불용 사업은 총 16개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0년 20%이상 불용사업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9,934,540	19,934,540	19,534,540	8,211,101	42.0%
2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98,200	98,200	98,200	47,736	48.6%
3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472,049	432,049	432,049	142,045	32.9%
4		기본경비	303,040	303,040	303,040	73,601	24.3%
5		전출금(독립유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180,000	180,000	180,000	81,599	45.3%
6	지역돌봄복지과	고독사 예방사업	1,375,000	1,375,000	1,141,900	269,950	23.6%
7	인생이모작지원과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242,000	242,000	242,000	237,477	98.1%
8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733,120	733,120	733,120	436,814	59.6%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9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67,200	67,200	67,200	19,093	28.4%
10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705,400	705,400	705,400	244,558	34.7%
11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1,025,000	1,025,000	1,025,000	212,500	20.7%
12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6,100,324	2,440,130	2,440,130	776,418	31.8%
13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2,004,800	2,004,800	2,004,800	632,672	31.6%
14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356,320	356,320	356,320	93,059	26.1%
15	장애인자립 지원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6,060,000	3,417,958	3,368,958	810,538	24.1%
16	자활지원과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731,100	593,880	713,880	204,066	28.6%

- 특히,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집행노력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사장 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 심사 시 그 원인(예산절감, 사업실패, 부적절한 예산운용 등)을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하는 등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심사가 필요함.
- '20년도 집행부의 예산사업 중 집행 잔액이 1억원 이상 이면서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년도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불용률 20%이상인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9,534,540	11,323,439	0	8,211,101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만75세이상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875명 신규 지원하였으나, 국민기초보장제도 완화 및 수급자 일제조사로 1,205가구 전환, 166가구 중지 등 대상자 감소로 미집행, 코로나19로 민관사회복지사 합동 세미나(민간소통워크숍) 행사 취소 ○ 향후대책:21년부양의무자기준폐지,소득기준완화및 별도가구 보장 지원 등 운영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등 노력하겠음
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432,049	290,004	0	142,045	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코로나19 지속확산으로 인한 위원회 대면회의 불가, 사업추진 곤란, 국외출장 불가 등으로 회의수당, 운영 예산 및 국외여비 불용액 발생 ○ 향후대책:
3	고독사 예방사업	1,141,900	871,950	0	269,950	2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스마트 약상자' 사업 예산 미집행 ○ 향후대책:21년본예산편성시에산감액편성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4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242,000	4,523	0	237,477	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사업 중단 후 미재개 ○ 향후대책:21년공모시감염증대 비계 획평가에 반영하여 축소, 중단 상황 최소화
5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733,120	296,306	0	436,814	5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사업 중단 후 일부 미재개 또는 축소 재개 ○ 향후대책:21년공모시감염증대 비계 획평가에 반영하여 축소, 중단 상황 최소화
6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	705,400	460,842	0	244,558	3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신규 개소 쉼터의 위치 변경 및 리모델링로 지연 개소 ○ 향후대책:신규개소한시설에 운영비신속지원
7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1,025,000	512,500	300,000	212,500	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자치구의 비전센터 설치 수요 감소에 따른 불용 ○ 향후대책:자치구 설치수요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불용액 최소화
8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2,440,130	887,295	0	776,418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보건복지부 호봉기준에 맞는 채용이 어려워 목표 인원보다 채용인원이 적었음 ○ 향후대책:보건복지부 호봉기준 개선요청 및 각 시설 별 채용 독려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9	장애인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	2,004,800	1,372,128	0	632,672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인단체 행사의 취소 및 축소로 인하여 불용 발생 ○ 향후대책: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정부방역지침에 따른방역 철저및계획된행사진행
10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3,368,958	2,558,420	0	810,538	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제공기관 휴관 등 이용실적 저조 및 보건복지부 최종확정(감액)내시액(20. 8. 통보) 미 반영 ○ 향후대책:코로나19방역관리철저 하에 서비스 활성화 및 국비내시액 반영 철저
11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713,880	504,292	0	204,066	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집단행사,집합교육 취소 지침에 따라 노숙인 정책 국제 컨퍼런스 전면 취소 및 희망프레임 사업 중단 ○ 향후대책:코로나19확산추이를반영한예산편성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

<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사업 비용부담

구분	시설급여 ³⁾			재가급여 ⁴⁾			관리운영비
	국비	시비	본인	국비	시·구비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	100%	무료	-	100%	무료	시비 100%
기타의료급여자	46%	46%	8%	47%	47%	6%	국비50%, 시비50%

-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사업의 본 예산액은 1,920억 5천 7백만원이었으나, 10억원을 감추경 하고 8억 9천 9백만원을 감전용하였으며, 예산현액 1,901억 5천 8백만원 중 1,860억 7천 8백만원을 집행하여 40억 8천만원이 불용되었음.

<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본예산	추경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192,057,000	-1,000,000	-898,757	190,158,243	186,077,891	4,080,351

3)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 및 3~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자(노인요양시설 입소)

4) 1~5등급,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재가서비스 이용)

○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19.8월)된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추정소요액인 1,887억 7천 2백만원에 비하여 32억 8천 4백만원이 많은 1,920억 5천 7백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리운영비 정산결과를 반영한 서울시 부담금이 확정('20.3월)된 이후에도 이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본예산 편성액인 1,920억 5천 7백만원에 비해 59억 7천 9백만원이 적은 1,860억 7천 8백만원이 서울시 부담금으로 확정 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중 10억원에 대해서만 감액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8억 9천 9백만원은 기초연금 지급 사업 등 부서 내 다른 사업으로 전용 사용하였음.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일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어르신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부담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90,627,000	468,757		2020-11-30
	기초연금 지급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36,405,853		468,757	
어르신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부담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92,057,000	430,000		2020-05-25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24,944		430,000	

○ 이는 서울시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확정된 이후 여러 차례 실시한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해 적절한 예산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을 반영한 결과, 40억 8천만원이 불용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②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제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생활지도원 증원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추진 중인 국고보조사업(국비 50%, 시비 50%)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⁵⁾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고,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합하여 최대 1주 52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부칙⁶⁾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가능하였으며, 주 40시간 적용기준이 주말을 제외한 5일이다 보니 주말 16시간까지 총 68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함.

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6)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지원 사업의 본 예산은 61억원이었으나 36억 6천만원을 감 추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24억 4천만원 중 7억 7천 6백만원이 불용되었음.

<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본예산	추경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6,100,324	-3,660,194	2,440,130	887,295	776,417	776,418

-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의 채용기준이 2호봉 이하인 자로 제한되어 있고 인건비 지원기준⁷⁾이 낮아, 생활지도원 채용실적 저조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50인 이상)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채용 현황

자치구	시 설 명	소 재 지	채용인원 (1분기)	채용인원 (2분기)	채용인원 (3분기)	채용인원 (4분기)
	8개소		12	12	9	13
종로구	문혜장애인요양원	강원도 철원군	0	0	0	0
종로구	은혜장애인요양원	강원도 철원군	0	1	6	0
노원구	쉼터요양원	노원구	3	1	2	2
은평구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3	2	1	6
양천구	해맑은 마음터	경기도 김포시	3	0	0	0
영등포구	한사랑마을	경기도 광주시	1	2	0	3
강남구	라피엘의집	경기도 여주군	2	2	0	1
송파구	신아재활원	송파구	0	4	0	1

7) 20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간호 조무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선임	직원		
2호봉	2,486	2,205	1,991	1,991	1,927	1,873	1,827	1,840

- 또한, 각 자치구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력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타 시도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교대인력 채용부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이 정부주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현재 채용기준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될 경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신규채용이 어려워 매년 불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 교대 인력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종사자 수로는 개정된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감소도 우려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추가 인건비 지원 검토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2) 사업설계의 부적절성

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2020년 2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하게 긴급 지원하고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 등에 한시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하고자 추진되었음.
- 서울시민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기본적 소비를 통해 안정적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서울시민에게 가구 규모에 따라 30~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1회 지급하였음.

2020년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20.3.31. 시행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제외 :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특별돌봄쿠폰 등), 긴급복지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 ※ 1~2인가구(30만원), 3~4인가구(40만원), 5인이상 가구(50만원)
- 신청기간 : '20.3.30.(월) ~ 5.15.(금), 47일간 (사용마감 : '20.8.31.)
- 지원방법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 대상자가 직접 선택
- 소요예산 : 5,778억원

- 재난 긴급생활비는 총 221만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그 중 160만 가구에게 5,281억 원이 지급되었음.

<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 및 지급현황

신청·접수	지급	
	건 수	금 액
2,216,672 가구	1,601,767 가구	5,281 억원

- 신청·접수기간은 3월 30일~5월 15일이었으며, 총 221만 가구의 신청·접수 결과를 보면 온라인 접수가(51.7%)가 가장 많았으며, 동주민센터 현장접수 (42.4%), 찾아가는 접수(5.9%)순으로 집계되었음.

<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 결과

총 계	온라인 접수	동주민센터 현장접수	찾아가는 접수
2,216,672 가구	1,145,058 (51.7%)	938,799 (42.4%)	132,815 (5.9%)

- 재난 긴급생활비 가구별 지급현황은 1~2인(30만원)가 71.1%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3~4인(40만원) 25.7%와 5인 이상(50만원) 3.3% 순으로 나타났음.

<표>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별 지급현황

총 지급건수	1~2인(30만원)	3~4인(40만원)	5인 이상(50만원)
1,601,767 가구	1,138,276	411,184	52,307

○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유형별 지급현황은 선불카드가 78.9%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였으며, 서울사랑상품권 21.1%로 집계되었음.

<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유형별 지급현황

총 지급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1,601,767	528,101,180천원	327,486 (20.4%)	111,530,590천원	1,274,281 (79.6%)	416,570,590천원

○ 재난 긴급생활비의 예산 편성액은 총 5,778억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총 5,499억원임. 이 중 사업비로 복지정책과 소관 '재난 관리기금'으로 편성액 4,436억원 중 4,217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운영비'로 지역돌봄복지과 소관으로 편성액 226억원 중 189억원 집행되었음.

- 재난관리기금 4,217억원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한 서울사랑 상품권 1,115억원 및 선불카드 4,166억원에 소요되었으며, 운영비 189억원은 재난 긴급 생활비 관련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음.

<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교부 및 집행내역

구분	편성액	교부액	집행액	비고	
총 계	5,778억원	5,776억원	5,499억원		
사업비	소 계	5,519억원	5,519억원	5,281억원	· 160만 가구 지원
	재난관리기금 (복지정책과)	4,436억원	4,436억원	4,217억원	· 서울사랑 상품권 - 33만 가구 1,115억원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	1,083억원	1,083억원	1,064억원	· 선불카드 - 127만 가구 4,166억원
운영비 (지역돌봄과)	226억원	224억원	189억원	· 상품권 보조비 및 수수료 · 통장활동비, 인건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자치행정과)	33억원	33억원	29억원	· 통장활동비, 인건비 등	

- 재난 긴급생활비 재원은 '20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으로 2,000억원을 편성하였음.
- 이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되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비로 245억 7천 7백만원이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1차 추경의 증액 편성 목적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단기근로 인력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보조 등임.
-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경우 1차 추경 산출 내역 상 발행률을 50%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발행률은 20.4%로 나타나 목표의 전발 수준으로 상품권 발행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1차 추가경정 예산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및 증가사유
재난관리 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기금전출금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00,000천원
		증 감 사 유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부족액 발생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소요예산 : 327,111,840천원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단기근로 인력 지원 : 4,247,675천원 - 2,495,696원 × (425개동×2인+본청 지원인력 1인) × 2개월
		○ 사업 홍보 등 지원 : 1,275,000천원 - 3,000천원 × 425개동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보조 : 16,355,592천원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총 소요 예산 327,111,840천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률 50% × 발행 보조율 10%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 2,698,673천원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총 소요 예산 327,111,840천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률 50% × 발행 수수료 1.65%
		증 감 사 유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편성

○ 이후 3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소요액 확보, 자연재난 발생 시 이재민 보상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부족액 발생에 따라 적립금 500백억을 증액하였음. 반면 4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보조 비용 집행 잔액 발생을 사유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운영예산을 3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음.

<표> 재난 긴급생활비 관련 제1~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경정 규모 (C)	제2회 추가경정 규모 (D)	제3회 추가경정 규모 (E)	제3회 추경 예산 (안) (F=B+C+D+E)
복지정책과							
1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	-	200,000	-	50,000	250,000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A)	기정 예산 (B)	제1회 추가경정 규모 (C)	제2회 추가경정 규모 (D)	제3회 추가경정 규모 (E)	제4회 추가경정 규모 (F)	제4회 추경 예산 (안) (G=B+C+D+E+F)
지역돌봄복지과								
2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운영	-	-	24,577	-	-	△310	24,267

○ 집행부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변경('20 5.12)을 통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운영비를 7억 9천 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예산 변경 사유는 재난 긴급생활비 관련 기간제 근로자 1,274명의 7일 연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임.

- 본 예산은 추후 동주민센터 민원안내와 현장 접수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1,274명에 대한 1주간(5.25.~5.29.) 인건비 7억 9천 5

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임. 집행부는 기간제 근로자 연장 채용의 사유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의 민원상담 및 서류 스캔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본 사업 기간(3.30~5.29.)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1주간(5.25.~5.29.) 연장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집행부는 본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따라 인건비 추가 사용분을 미리 예측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2차 추경 시 편성하지 않고 예산 변경을 통해 별도 사업의 예산으로 증액하였음.
- 이는 의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심의한 예산의 취지와 목적을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바, 예산 변경 시에는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변경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 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및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 예산 변경 내역

(단위:천원)

조직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부지정채권기관 지역내부관리과	서울돌봄 SOS센터운영	308-01 자치체상조금	9,454,915	794,880		2020 5.12	12,583,414	12,583,414	100%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운영	308-01 자치체상조금	24576940		794880		25,061,820	24,898,556	99%

나. 부적절한 사업 설계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예산 소요 방지 필요

- 재난 긴급생활비는 당초 사업 설계 과정에서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94만가구(117만가구의 80%) 총 3,271억원을 지원 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하지만 최종 지급 가구는 160만가구 총 5,281억원으로, 당초보다 66만 가구가 더 신청했으며 2,01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었음.
-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관심 증가(+23만명) 및 1인 및 2인 가구가 당초 예상보다 지급 대상에 많이 포함(+43만명)된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통계자료와 현실상황의 차이가 발생한 것임.

<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소요예산 추계

구 분	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요예산	4,088억원	2,030억원	1,770억원	288억원
지원 가구 수	1,177,000가구	676,775가구	442,552가구	57,673가구
지원액	-	30만원	40만원	50만원

※ 80% 지원 시 약 3,271억원 소요

-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구원수 별 가구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추계를 위한 원 자료(raw data)도 미비한 상황임. 이처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의 관련 데이터가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실시되어 정확한 규모 및 지원예산 추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음.
- 이로 인해 1~2인 가구의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크게 낮아, 사업 대상이 확대 되어 3차례의 추경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예상보다 막대한 예

산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는 최초 사업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가구원수 별 지급 가구수 현황

가구원수 별 지급 가구수						
구 분	총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당 초	1,177,000	376,640 (32%)	300,135 (25.5%)	247,170 (21%)	195,382 (16.6%)	57,673 (4.9%)
분석결과	1,637,207	706,343 (43.1%)	439,210 (26.8%)	250,744 (15.3%)	185,189 (11.3%)	55,721 (3.4%)

-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은 총 1,393명이며,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로 자치구 인사부서에서 채용되어 동별 2~4명씩 배치되었음. 근무기간은 '20.3.30~'20.5.29.(총 9주간)이며, 주요업무는 동주민센터 민원안내 및 현장접수 및 질서유지 및 '찾아가는 접수' 방문 전담 추진, 기타 행정보조 업무 수행 등 임.
- 총 9주 동안 총 1,393명에 소요된 인건비는 총 65억 4천만원임. 재난 긴급 생활비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이 결정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행복e음의 접근권한이 없으므로 단순 신청·접수 단계에서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서 동별 2~4명의 인력을 배치한 것에 대한 적합성이 우려되며, 사업 지원체계에서 본다면 신청·접수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 특성상 신속하게 지급되는 만큼 사후조사와 환수조치도 동반되는데, 오히려 이 단계에서 더욱 인력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고용기간과 업무분장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처럼 사업의 추진 시 대상선정 및 지급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행정 비용을 소요하게 됨. 재난긴급 생활비 지급을 위해 수반되는 수많은 인력의 편성 등 그로 인한 과도한 행정비용 소요는 이미 1차 추정 예산 편성과과정에서도 우려했던 사항임. 추후 사업 초기 과정에서 부터 예산의 규모를 적절하게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인 인력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코로나19라는 재난 긴급 상황에서 소비지출이 감소한 수혜 집단의 소비를 증진시켜 소득계층 간 소비 평탄화에 기여하였고, 필수적 용도의 지출을 통해 안정적 일상을 유지시키도록 지원한 것으로 평가됨.⁸⁾
 -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었고, 수혜가구의 소비를 12% 이상 증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였음. 또한 지원 시민 중 설문에 응한 88%의 시민은 재난긴급생활비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86.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⁹⁾
- 하지만 수혜 집단은 재난긴급생활비로 소비 지출을 증가시켰으나 지원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다시 위축된 소비지출 상태로 복귀하였음. 재난긴급생활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회적 지원으로서의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¹⁰⁾
- 또한 재난 긴급생활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향후 찾아가는 방문 접수와 같이 정보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제도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편성된 홍보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문혜진 외(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 서울시 복지재단-2020-65

9) ‘가계 도움 88%, 지역경제 활성화 86.8%’ 통계로 본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효과 (서울시 보도자료, 2021.5.4.)

10) 문혜진 외(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 서울시 복지재단-2020-65

○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속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번의 추경과 예산 변경을 실시하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이미 사업초기부터 예견된 사항이라고 수 있음.

- 더욱이 집행부는 사업 초기부터 충분하지 않은 시간 등을 이유로 추진 방법과 설계과정에서 우려되는 보습을 보인 바 있음.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설계를 체계적으로 하여, 신중한 예산 편성과정과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본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돌봄SOS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19년 보다 325% 증액된 130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종 조정을 거쳐 125억 3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19년 5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당초 ’20년에 8개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어르신·장애인 등의 가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12개구 까지 사업을 조기 확대하여 전 자치구로 시행하였음.

▶’19년 시행 5개구 : (1단계)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

▶’20년 시행 20개구 : (2단계) 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구

(3단계)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성북, 강북,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

-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 발굴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 매니저가 방문을 실시하여 돌봄 욕구를 파악 후 맞춤형 8대 돌봄 서비스 지원하는 것임.
- 사업의 추진 체계는 동 주민센터(복지 2팀) 내 '돌봄 SOS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며, 각 동 돌봄매니저 2명 배치(복지직 1명, 간호직 1명)하며, 구단위 '돌봄 지원팀(복지직 1명, 간호직 1명)'을 설치함.

「돌봄SOS센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 '19년 어르신·장애인 주 대상, '21년까지 보편적 확대
- 사업시행 : '19. 7. 18일부터 운영 및 서비스 시행
 - '19년 5개 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 시범사업 시행
- 사업내용 : 동 주민센터(복지2팀) 내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 각 동 돌봄매니저 배치(복지직1+간호직1), 구 단위 '돌봄지원팀' 설치(복지직1+간호직1)
- 주요업무 : 돌봄 대상자(신청·발굴)에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8대 서비스 지원
 - 일사제,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서비스

나. 반복적 추경편성 및 예산 변경 개선 필요

- 본 사업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돌봄 매니저 인건비 및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를 22억 4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감액 사유는 인력채용 지연으로 인해 2단계 사업추진 8개 자치구 신규채용 인력이 본래 3월 시험, 7월 배치 예정이었으나 각각 6월 시험, 10월 배치로 연기되면서 인건비 19억 9천 4백만원(50%)과 사업지연이 예상되면서 발생한 서비스 지원 사업비 2억 5천만원(12%)을 감액한 것임.

○ 하지만 집행부는 인력 채용 연기 등 사업 지연으로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 편성한지 1달 만에,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SOS센터 사업의 전면 시행을 위해 3차 추경 예산으로 45억 8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부 사유로는 신규운영 12개 자치구 및 기존운영 8개 자치구의 추가지원을 위한 것으로, 돌봄 매니저 인건비 및 서비스지원 사업비 등 관련 인력 충원하고 사업의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임.

<표> 2020년도 돌봄 SOS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2차 추가경정 예산	3차 추가경정 예산
계 (증감)	3,065,545	12,535,978	10,291,915 (△2,244,063)	14,875,294 (4,583,379)
사무관리비	120,000	330,000	330,000	33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810,545	11,698,978	9,454,915 (△2,244,063)	13,978,294 (4,583,379)
자치단체 자본보조	135,000	507,000	507,000	567,000 (60,000)

<표> 2020년도 돌봄 SOS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 변경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구 분	산출내역	증감사유
2차 추경예산 (20.5.4 제출)	○ 돌봄매니저 인건비 △1,994,063 천원 ○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 △ 250,000천원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채용과 산업시행 지연으로 2단계 사업추진 8개구의 서비스 지원 인건비 및 사업비 감소
3차 추경예산 (20.6.5 제출)	○ 공간개선비 60,000 천원	돌봄SOS센터 전면시행에 따른 신규 운영 12개 자치구, 기존운영 8개 자치구 추가 지원
	○ 돌봄매니저 인건비 546,179 천원 ○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 3,977,200천원	돌봄 SOS센터 서비스지원사업비 및 돌봄매니저 인건비 편성

○ 3차 추경 예산의 대부분은 25개 자치구 사업 확대에 의한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39억 7천 7백만원)와 돌봄매니저 인건비(5억5천만원)로 볼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집행부는 미참여 중인 12개 자치구가 내년도에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돌봄SOS센터에서 제공 중인 돌봄서비스를 선행 제공하는 형태로 돌봄SOS 사전사업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12개 자치구와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 매니저 (각 동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구단위 돌봄지원단 설치)의 채용을 통한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과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통해 성과 도출을 위한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진행하려는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표> 서울 돌봄 SOS센터 사업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공간개선비 20개구*2명*1,500,000원 = 6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sos센터」 전면 시행에 따라 신규 운영 12개 자치구, 기존 운영 8개 자치구에 추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돌봄매니저 인건비 546,179,000원 = 546,179천원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 3,977,200,000원 = 3,977,200천원
	증감사유
	○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 - '19년 시행 5개구 1년분 사업비 698,968천원*50%(6개월분)*12개구 + 기시행 자치구와의 차액분 60,295천원*8개구 = 3,977,200천원 ○ 돌봄매니저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1개월(4주) 인건비 2,438,296원*2명*12개구*6개월 + 기간제근로자 1개월(4주) 인건비 2,438,296원*2명*8개구*5개월 = 546,179천원

○ 또한 본 사업은 2차 추경 이후 예산 변경(20.5.12)을 실시하여 7억 9천 5백 만 원을 감액 편성한바 있음. 집행부는 예산 변경 사유를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채용 지연으로 2단계 사업추진 8개구의 돌봄SOS센터 서비스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이미 코로나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2차 추경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22억 4천 4백만원을 감추경을 실시한 바, 동일한 사유로 추가적인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잘못된 사업 추계로 인한 부주의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2차례 본 사업에 대한 감액을 실시했음에도,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증액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 없는 변경을 실시하였음.

<표>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 및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예산 변경 내역

(단위:천원)

조직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복지정책신규사업 지역개발본부지과	서울돌봄SOS센터설치운영	308-01 자단체상조금	9,454,915	794,880		2020.5.12	12,583,414	12,583,414	100%
	서울시재난긴급생활비지원사업운영	308-01 자단체상조금	24,576,940		794,880		25,061,820	24,898,556	99%

○ 이처럼 본 사업의 빈번한 예산편성의 변경은 해당사업의 예산편성 및 추진과정이 불명확하다는 의심을 들게 하며,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체계적인 사업 설계 및 실적 관리 필요

- 본 사업은 2차 추경 및 예산변경을 통한 감액과 3차 추경을 통한 증액을 통해 반복적 예산의 감추경을 실시하였음.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사업의 계획 및 실시에는 예산이 기본이 되는데, 예산의 반복적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하겠음.
- 돌봄SOS센터 사업은 전 자치구 확대 시행을 위해, 20개구에 인력배치 후 동 단위 「돌봄SOS센터」로 사업전환(선행사업 → 본사업)을 추진하였음. 또한 각 자치구별 인력배치 일정에 따라 동 단위 돌봄서비스 지원체제로 전환을 추진하였음.
 - 기존 8개 자치구는 '20년 11월말~12월초에 인력을 배치하여 21년 1월 본 사업으로 전환 하며, 신규 12개 자치구는 '21년 7월 인력 배치 이후 본 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 인력 배치 일정

구 분	선행사업 시작	인력배치	본사업 전환	자치구명
8개구	'20.8월~	'20.11월말~ 12월초	'21.1월~	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구
12개구	'20.8월~	'21.7월	'21.7월~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성북, 강북,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

○ 돌봄SOS센터 사업의 '20년 채용 인원은 총 340명(복지직 172명+간호직 168명)임.

- '19년 시행자치구(5개구) : 69명(복지직 28명+간호직 41명)
- '20년 선정자치구(8개구) : 250명(복지직 124명+간호직 126명)
- '20년 신규자치구(12개구) : 21명(복지직 20명+간호직 1명)

- 돌봄 SOS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돌봄 매니저(각 동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구단위 돌봄지원단 설치)의 채용을 통한 인력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하지만 동 단위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 및 자치구에서 돌봄 SOS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된 인건비를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게 됨.
- 본 사업은 각 동의 돌봄매니저 채용이 원칙이나, 3차 추경 시 편성된 인건비는 각 자치구청에 돌봄지원단을 기간제 인력으로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사업의 체계 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추후 성공적인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 적절한 인력을 편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대해지는 인력을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표> 2020년 서울 돌봄 SOS센터 인력 채용현황

자치구		총 계	사회복지직	간호직	자치구		총계	사회복지직	간호직
총 계		340	172	168					
소계		69	28	41	소계		21	20	1
2019년 선정 자치구 (5개구)	성동구	18	9	9	2020년 신규 시행구 (12개구)	종로구	1	1	-
	노원구	22	11	11		중 구	2	2	-
	은평구	15	8	7		용산구	2	2	-
	마포구	2	-	2		동대문구	2	2	-
	강서구	12	-	12		성북구	1	1	-
소계		250	124	126		강북구	2	2	-
2020년 공모선정 자치구 (8개구)	광진구	32	16	16		구로구	3	2	1
	중랑구	11	-	11		금천구	2	2	-
	도봉구	30	15	15		동작구	2	2	-
	서대문구	31	16	15		관악구	2	2	-
	양천구	38	19	19		서초구	1	1	-
	영등포구	38	19	19		강남구	1	1	-
	송파구	34	21	13					
	강동구	36	18	18					

- 본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당초보다 빨리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으며, '20년 돌봄 SOS센터 25개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 실적'은 총 43,086건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사업 실적을 보면 전 자치구 확대에 의한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음.
 - 자치구별 서비스별 제공 실적을 보면 '19년도에 사업을 실시한 기존 5개 자치구는 8대 서비스 중 단기시설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규 20개 자치구의 경우 8대 서비스 중 평균 4.5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 3개의 서비스 제공 실적을 가진 자치구도 20개 자치구 중 40%에 해당하는 8개로 집계되었음.
- 일부 자치구별 저조한 서비스 제공 실적은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추경을 통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음.
 - 사업의 양대 확대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등을 통해 전 자치구가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더불어 추후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면밀한 사업 관리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됨.
- 또한 25개 자치구의 서비스별 제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 8대 서비스 중 단기시설(20개 자치구 실적無), 건강지원(16개 자치구 실적無), 안부확인(15개 자치구 실적無) 순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본 사업이 표면상으로는 8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자치구로 확대하였으나, 그 역할과 기능은 아직 미비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음.

추후 충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보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실적이 발생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요망됨.

〈표〉 2020년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일시 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건강 지원	안부 확인	정보 상담
2020년	43,086	5,284	17	928	1,751	10,632	139	193	24,142
기존5개구	19,350	2,753	5	751	1,302	4,334	97	142	9,966
성동구	4,041	533	0	140	468	732	18	60	2,090
노원구	2,923	748	0	66	41	466	20	4	1,578
은평구	4,818	559	0	166	500	1,070	22	39	2,462
마포구	4,163	415	0	160	168	1,260	5	26	2,129
강서구	3,405	498	5	219	125	806	32	13	1,707
신규20개구	23,736	2,531	12	177	449	6,298	42	51	14,176
종로구	1,288	76	0	0	0	544	0	0	668
중 구	797	60	0	0	0	356	0	0	381
용산구	890	78	0	0	39	302	0	0	471
광진구	1,078	128	0	54	31	309	0	0	556
동대문구	772	188	4	0	0	244	0	0	336
중랑구	1,035	187	5	0	0	194	27	26	596
성북구	795	77	0	0	0	219	0	0	499
강북구	583	151	0	12	51	97	0	0	272
도봉구	896	170	1	70	131	229	0	0	295
서대문구	1,739	229	0	0	0	399	2	2	1,107
양천구	956	143	0	21	104	176	0	0	512
구로구	4,399	190	2	3	3	596	4	4	3,597
금천구	421	75	0	0	47	87	0	10	202
영등포구	966	69	0	15	42	309	0	0	531
동작구	293	52	0	0	0	84	0	0	157
관악구	2,599	212	0	0	0	474	0	0	1,913
서초구	329	55	0	0	0	103	0	0	171
강남구	216	43	0	0	0	65	0	0	108
송파구	2,362	219	0	0	0	962	0	0	1,181
강동구	1,322	129	0	2	1	549	9	9	623

※ 정보상담 : 돌봄대상자의 기초적 욕구와 주요 문제점 현장방문 등 확인 (서울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관리)

3 기금 운영 관련

1) 기금운용 결산 총괄 및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

○ 2020 회계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968억 7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3,278억 8천 7백만원)보다 231억 8천만원 감소한 것으로써 2개 기금(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4개 계정(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구호계정)이 운용되었음.

<표> 2020년도 복지정책실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9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327,887	△231,080	260,872	491,952	96,80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3,018	△113	540	653	12,90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5,384	△1,137	2,738	3,875	24,247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7,990	△348	652	1,000	7,642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81,495	△229,482	256,942	486,424	52,013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0	2019	증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13,018	13,436	13,018	
	예치금잔액	1,018	1,436	△418	사업추진에 따른 감소
	예탁금잔액	12,000	12,000	0	
운용수입	합계	1,558	1,839	△281	
당해 연도 조성 ②	소계	540	403	137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구분	주요항목	2020	2019	증 감	사유(상세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227	303	△76	금리 변동
	기타수입	313	100	213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4개소 보증금 반납 및 사업집행잔액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1,018	1,436	△418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운용지출	합계	1,558	1,839	△281	
당해연도 사용 ㉠	소 계	654	821	△167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653	745	△92	코로나19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사성 사업 축소 실시(비대면)
	융자성사업비	0	75	△75	어르신일자리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신청저조
	기본경비	0.8	1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905	1,018	△113	사업추진에 따른 감소
	당해연도 현재액 ㉠+㉡-㉢	조성현재액	12,905	13,018	△113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905	1,018	△113	사업추진에 따른 감소
	예탁금	12,000	12,000	0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0	2019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25,384	25,682	△298	
	예치금잔액	10,984	11,282	△298	결산에 따른 예치 금 변동
	예탁금잔액	14,400	14,400	0	
운용수입	합계	13,722	13,453	269	
당해 연도 조성 ②	소 계	2,738	2,171	567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280	1,630	650	입주기간 연장에 따른 반납 미도래 (기본2년, 최장6 년)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458	541	△83	공금예금 이자율 변동
	기타수입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10,984	11,282	△298	결산에 따른 예치 금 변동
운용지출	합계	13,722	13,453	269	
당해 연도 사용 ③	소 계	3,874	2,469	1,405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696	698	△2	집행잔액 변동
	융자성사업비	3,161	1,750	1,411	전세주택 수요변 동
	기본경비	17	21	△4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감소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9,848	10,984	△1,136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24,247	25,384	△1,137	사업추진에 따른 감소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9,848	10,984	△1,136	사업추진에 따른 감소
	예탁금	14,400	14,400	△1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0	2019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7,642	7,990	0	
	예치금잔액	3,222	3,570	0	
	예탁금잔액	4,420	4,420	0	
운용수입	합계	4,222	4,341	△119	
당해 연도 조성 ②	소 계	652	4,341	△3,689	
	전입금	0		0	
	보조금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71	626	△155	융자금미회수 (가용자간연장)
	예수금	0		0	
	이자수입	136	189	△53	
	기타수입	45	44	1	
	예탁금원금회수	0		0	
	예치금회수	3,570	3,482	88	
	운용지출	합계	4,222	4,341	△119
당해 연도 사용 ③	소 계	1000		1,000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827	618	209	사업 규모 조정으로 사업비 감액
	융자성사업비	170	150	20	
	기본경비	3	3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기타지출	0		0	
	예탁금	0		0	
예치금	3,222	3,570	△348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7,642	7,990	△348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3,222	3,570	△348	
	예탁금	4,420	4,420	0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0	2019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281,495	279,759	1,736	
	예치금잔액	248,155	213,089	35,066	예탁금 회수로 인한 증가
	예탁금잔액	33,340	66,670	△33,330	예탁금 회수로 인한 감소
운용수입	합계	538,437	253,534	284,903	
당해연도 조성 ②	소 계	256,942	7,115	249,827	
	전입금	250,000	0	250,000	코로나19 대응 사업 추진(재난간급생활비 지원 등)을 위한 전입금 증가
	보조금	3,440	22	3,418	국고보조금 (생활치료 센터 운영, 격리시설 운영 등) 수령액 증가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2,461	6,927	△4,466	예치금 규모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기타수입	1,041	166	875	
	예탁금원금회수	33,340	33,330	10	예탁금 회수로 인한 증가
	예치금회수	248,155	213,089	35,066	예탁금 회수로 인한 증가
	운용지출	합계	538,437	253,534	284,903
당해연도 사용 ③	소 계	486,424	5,379	481,045	
	비용자성사업비(고유 목적)	486,424	5,379	481,04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 증가
	융자성사업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5	0	0.5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탁금	0	0	0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52,013	281,495	△229,482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52,013	248,155	△196,142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증가로 인한 예치금 감소
	예탁금	0	33,340	△33,340	예탁금 회수로 인한 감소

- 2018회계연도의 기금 중 고유목적사업은 21개 사업, 당초 지출계획현액 5,162억 3천만원 중 61.4%인 4,886억 1백만원을 지출하고, 276억 2천 9백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38.6%)이 미집행되었음.

<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집행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미집행액	미집행률	
합계	21	516,230	488,601	0	27,629	38.6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1	970	653	0	317	32.7
	장애인복지계정	1	700	696	0	4	0.6
	자활계정	5	828	828	0	0	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4	513,732	486,424	0	27,308	5.3

2)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

-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기금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금운영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재활용된다는 점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지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0회계연도 기금융자사업은 3개 사업으로, 당초 지출계획현액 51억원의 34.7%인 17억 6천 8백만원이 미집행된 바, 2019회계연도(불용률 25.5%)와 비교하여 지출계획 후 집행되지 못한 불용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기금별 용자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3	5,100	3,332	0	1,768	34.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	100	0	0	100	100.0
장애인복지계정	1	4,800	3,162	0	1,638	34.1
자활계정	1	200	170	0	30	15.0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의 경우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용자지원의 불용률이 100%로 집행 잔액이 100백만원 발생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의 잔액이 4,451백만원으로 불용률이 70%로 나타났음. 위 기금 계정의 경우 초기 기금 편성 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음.
- 기금의 성격상 불용액이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재활용되는 특징이 있으나, 매년 연례적으로 기금지출사업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예산불용이 되어 다시 예산 재편성의 순으로 기금지출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 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등에 대해 서만 예외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불용예상액을 예치금이나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변경하여 이자 수입을 증가시키는 수익창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및 용자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11개)		970	652	-	318	33
1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24	124	-	0	0
2	어르신 자원봉사	139	110	-	29	21
3	어르신 정보화 교육	51	51	-	0	0
4	경로효친 행사지원	27	7	-	20	74
5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0	30	-	0	0
6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100	60	-	40	40
7	어르신 지도자육성	111	70	-	41	37
8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98	61	-	37	38
9	어르신 주거지원	80	47	-	33	41
10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10	92	-	18	16
11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용자지원	100	0	-	100	10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2개)		5,500	3,858		1,642	29.8
1	장애인단체공모사업지원	700	696	-	4	0.6
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4,800	3,162		1,638	34.1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6개)		1,029	998	0	31	3.01
1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71	71	0	0	
2	자활교육훈련	161	161	0	0	
3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운영지원	384	384	0	0	
4	자활유통활성화	58	58	0	0	
5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155	154	0	1	0.6
6	전세점포 임대자금 용자 지원	200	170	0	30	15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4개)		513,732	486,424	0	27,308	5
1	이재민 재해보상	477,302	461,546	0	15,756	3
2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7,764	20,723	0	7,041	25
3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2,318	2,258	0	60	3
4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6,348	1,897	0	4,451	70

-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는 지출계획 수립 당시부터 정밀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재원의 특성상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과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과도하게 증액하고 있는 바,
 - 기금 지출사업예산 편성 시 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출사업예산 이월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효율적 기금 운영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